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3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3871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5079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3.

판 결 선 고 2018. 5.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238,632,650원, 지방교육세 44,150,69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3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용선

판사 문주형

판사 이수영